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1. 9
-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4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1.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가. 개정이유

- 부천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라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타시·군과 비교하여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재조정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인하 조정(안 11조제1항)
-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신설(안 제10조2항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사용료 징수 인하 이유는?	○ 부천에 연고를 둔 프로구단의 경기유치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 인하에 따른 예상되는 수입은?	○ 경기개최수에 따라 다르지만 자립도 60%를 예상하고 있음
○ 잔디구장 연간 사용 규정은?	○ 없음(수시 사용 가능)
○ SK프로축구단 홈구장을 부천으로 유도할 의향은?	○ 구단과 협의 적극 노력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종합운동장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입장수입 징수를 인하시 사용횟수가 증가하여 수입증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사용실적에 따른 세외수입을 주후 비교분석, 사용료 징수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의결년월일	2001. 1. 19 (제84회)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라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타시·군과 비교하여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재조정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인하 조정(안 제11조제1항)
-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신설(안 제10조2항 "별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잔디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50,000	70,000	150,000	300,000
	시민운동장			주간	30,000	50,000	100,000
부천 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테니스장			면당	10,000	20,000	12,000	24,000
궁도장				10,000	10,000		
비고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주잔디구장은 1개임을 원칙, 게임초과당 2할을 가산함 ○ 체육대회 등 행사는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별표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종 합 운 동 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시 민 운 동 장		1인 2시간	500	300
부 천 체 육 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테 니 스 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궁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위명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궁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별표 3)

방 송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종합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시민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체육 이외 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비 고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신 출 기 초	비 고
라이트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 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실사용전기유류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스코어판		1일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사위실		1일 1회 기본료(20,000)+전기사용료	
전광판	종합운동장	기본료 20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실내체육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라인기계		1대당×1일 20,000원(석회포함)	
접의자		1개당×1일 300원	
탁자		1개당×1일 2,000원	
발인대		1개당×1일 4,000원(대) 2,000원(소)	
각실사용		1일 50,000원	

-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 /30일)
-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 축구잔디구장은 1일 3개임을 초과할 수 없다.
-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체육경기시는 각 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20퍼센트(프로젝트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부천시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부천시에 유치하는 전국 단위 이상의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연습사용료 (별표3) 방송사용료 (별표5)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10퍼센트(프로젝트는 15퍼센트).....5퍼센트.....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연습사용료 (별표3) 방송사용료 (별표5)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의 행사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의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신설)						중 합 운동장	주경 기장	육상장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트랙)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잔디 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50,000	70,000	150,000	300,000
시 민 운 동 장	주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시 민 운 동 장	주간		(현행과 같음)				
부 천 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부 천 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야간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보조경기장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야간		(현행과 같음)		
테 니 스 장	면당	10,000	20,000	12,000	24,000	테 니 스 장	면당		(현행과 같음)				
(신설)						궁 도 장			10,000	10,000			
비고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초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기타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및 부천체육관의 보조경기장 경우를 준용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임 ○ (신설) ○ (신설)					비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주잔디구장은 1개임을 원칙, 개입초과당 2함을 가산함 ○ 체육대회 등 행사는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별표2)					(별표2)								
연습사용료					연습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신설)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현행과 같음)						
부천체육관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2,500	2,000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보조경기장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테니스장	면당	(현행과 같음)						
(신설)					궁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위명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 ○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궁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별표3)					(별표3)								
방송사용료					방송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구 분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중계방송	체육 경기	(신설)					중계방송	체육 경기	종합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시민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시민운동장	(현행과 같음)			
		실내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현행과 같음)			
	체육 이외 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체육 이외 행사		(현행과 같음)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현행과 같음)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현행과 같음)			
비 고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비 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별표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고	구 분	산 출 기 초	비고
라이트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 용료		라이트시설	(현행과 같음)	
전기·조명 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 용료		전기·조명 등	(현행과 같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실사용전 기유류 고시가격		냉·난방	(현행과 같음)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음향시설	(현행과 같음)	
스코어판	1일 1회 10,000원+전기사용료(추가시 1개입당 5,000원)		스코어판	1일 20,000원	
농구골대	1개입당 50,000원		농구골대	1일	
샤 위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전기사용료		샤 위 실	(현행과 같음)	
전 광 관	(신설)		전 광 관	총 합 운동장 기본료 20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 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 을 별도 징수	
	실 내 체육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 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징수하고, 녹 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실 내 체육관	(현행과 같음)	
(신설)			라인기계	1대당 1일 20,000원(석회포함)	
(신설)			점 의 자	1개당 1일 300원	
(신설)			탁 자	1개당 1일 2,000원	
(신설)			발 인 대	1개당 1일 4,000원(대), 2,000원(소)	
(신설)			각설사용	1일 50,000원	
○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 ○ 관람수입이 있는 행사 및 경기에는 스코어판 및 농구골대 등 필수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현행과 같음) ○ (삭제) ○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 축구잔디구장은 1일 3개임을 초과할 수 없다. ○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체육경기시는 각 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